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2025. 4. 24.)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5-28
- 나. 제 안 자: 권인순 의원 외 9인
- 다. 제안일자: 2025년 4월 11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5년 4월 11일(금)

2. 제안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상위 인용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상위법령 및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축산법」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11호
- 「축산법」 → 「축산법」 제2조제6호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경제진흥과(동물정책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5. 3. 27. ~ 4. 2.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5년 4월 11일 권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상위 인용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
- (기존)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안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¹⁾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 조항을 신설함.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조와 안 제6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된 법령을 새로 제정된 법령으로 변경하였으며,

1)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안 제2조는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법령 제명이 변경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인용 법령을 변경하는 등 법령명 현행화 및 관련 법률을 명시하였음.

조항	현행	변경
■ 안 제1조(목적)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 「축산법」 제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제3조(사육허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법」 제2조제6호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그리고, 안 제3조(사육허가)의 각 호는 사육허가 비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제1호는 조례의 맥락과 맞지 않는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의료법인’²⁾을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호³⁾를 반영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로 변경하였음.

2)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생략)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육허가) ----- ----- <u>구청장</u>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u>의료법인</u> , 수의사 또는 가축 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u>기타</u>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1. ----- <u>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u> ----- ----- <u>그 밖에</u> ----- -----

- 기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이와같이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현행화하였고, 동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⁴⁾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고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참고로,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포구 전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붙임1. 마포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2009.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 2011-6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舊)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예관한 법률 제34조] 제 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7. 2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서

해 당 지 역	지 정 일	제 한 목 적	제한 가축의 종류
마포구 전 지역	제정 '88.05.01 개정 '01.01.05	생활환경 보전 및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법용 가축)

3.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행정구역과 일치하므로 도면게재 생략

4. 이해관계인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3153-8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축분뇨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